

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43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5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안산시의회 <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> 자치법규 정비 권고
【의정법무과-12814(2023.10.4.)호】
-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높이기 위함

주요내용

- 목적 관련 내용 정비 (안 제1조)
 -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 조례 형식으로 규정 정비
 - 어문규정에 따른 정비(띄어쓰기 1건)
- 상위법 기준으로 조례의 용어 정의 정비 (안 제2조)
- 조항이동(제7조 → 제3조)을 통한 조례 명확화 (안 제3조, 안 제7조)
- 직제에 따른 기관 순서 정비 (안 제3조, 안 제9조)
 - 안산상록경찰서 및 안산단원경찰서 → 안산단원경찰서 및 안산상록경찰서
- 용어 관련 정비 : 약칭 수정 (안 제6조)
-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: 국(원)장 → 국장 (안 제9조)
- 인용 조례 명칭 정비 (안 제12조)

개정 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 · 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【붙임 4】

사전예고(결과) : 【붙임 5】 (의견없음)

○ 입법예고 : 2024. 4. 15. ~ 2024. 4. 25. (1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【붙임 6】

○ 방침결정문 : 【붙임 7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”을 “학교폭력예방”으로, “교육환경조성”을 “교육환경조성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라 한다), 안산단원경찰서장, 안산상록경찰서장, 청소년 관련기관·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”를 “법 제15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교육장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담당원(국)장”을 “담당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안산상록경찰서 및 안산단원경찰서”를 “안산단원경찰서 및 안산상록경찰서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「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교육청소년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교육청소년과장 이 세 영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청소년안전망팀장 전 아 주
	담당자 성명·전화	안희화 (행정 3455)

[붙임 2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·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학교폭력예방----- ----- -----. -----교육 -----환경 조성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학교폭력”이란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</p> <p><삭제></p>

강요 ·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
폭력, 따돌림, 사이버따돌림,
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·
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
·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
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.

2. “학교”란 「초 · 중등교육
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·
중학교 · 고등학교 · 특수학교
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
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
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④ (생
략)

<신 설>

제6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등) ①
시장은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
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
다)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
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

<삭제>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④ (현
행과 같음)

⑤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
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안산교
육지원청 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
라 한다), 안산단원경찰서장, 안
산상록경찰서장, 청소년 관련기
관 ·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
한다.

제6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등) ①
----- 법 제15조 -----

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· 단체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-----교육장-----

② (생 략)
제7조(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)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, 안산상록경찰서장, 안산단원경찰서장, 청소년 관련기관 ·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9조(협의회 구성 등)

제9조(협의회 구성 등)

① ~ ② (생 략)

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당연직 위원은 안산시 청소년 보호업무 담당원(국)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촉 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
③ -----

----- 담당국장-----

1. ~ 2. (생 략)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<u>안산상록경찰서 및 안산단원경찰서</u> 소속 경찰공무원	3. <u>안산단원경찰서 및 안산상록경찰서</u> -----
4. ~ 9. (생략)	4. ~ 9. (현행과 같음)
④ ~ ⑤ (생략)	④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수당 등)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 <u>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」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	제12조(수당 등) ----- ----- 「 <u>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」----- ----- -----.

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9-431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. 6. 10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의 순서를 재배치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안 제3조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제5항을 제4항으로 배치 (안 제3조)

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**제3항**”을 “**제4항**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안산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폭 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·계도 등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 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의 선도·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 다.</p> <p>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 련 기관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 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④ (현 행과 같음)</p> <p>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 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 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<u>제4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(개정안 제5항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⑤ <u>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안산교육 지원청 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라 한다), 안산단원경찰서장, 안산상 록경찰서장, 청소년 관련기관·단 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</u></p>	